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5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소희·서명옥

김상훈 • 우재준 • 김용태

김기현 • 이종배 • 김선교

임이자 · 정동만 · 서범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 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최근 지 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,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 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, 2년마다 분석·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·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10조).

법률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10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자연환경보전정책"을 "국회에 제출하고, 자연환경보전정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	제8조(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
수립)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	수립) ①
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	
(이하 "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"	
이라 한다)을 <u>10년</u> 마다 수립하	<u>5년</u>
여야 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	제10조(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
시행) ①・② (생 략)	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	③
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	
다 정기적으로 분석・평가하고	
그 결과를 <u>자연환경보전정책</u> 에	
반영하여야 한다.	연환경보전정책